

규제개혁신문고

주요 개선사례 80선

2014. 6. 10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의 규제애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규제개혁신문고 TF

전화 044) 200-2630
홈페이지 www.better.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동 205호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규제개혁신문고

주요 개선사례 80선

2014. 6. 10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 지난 3.20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5월말 현재 총 5,262건의 규제 건의가 접수되었으며, 소관부처에서는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검토하여 국·과장 등 책임자 실명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합리적 건의'에 대해 불가피하게 규제를 존치해야 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급 책임자 실명으로 소명하도록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 ◇ 그동안 각 부처에서 검토하여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 80건을 정리해 배포하오니, 동일·유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 차

I. 국민생활 규제개선 (29건) 1

1. 기초수급 대상 고등학생 교과서비용 선 지급 후 정산토록 개선
2. 추가 합격대학에 대한 신입생 등록금 대출절차 간소화
3. 중학교 검정고시 만 12세 이하에서도 가능
4. 휴대전화 보조금 미끼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5. ActiveX 설치 없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6. 하천구역내 농업생산시설 사용승인시 하천점용허가 의제
7. 조합원 가입시 농업인 증명서류 간소화
8. 공공기관 출입 민간차량 승용차 요일제 적용 면제
9.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 행위 합법화
10. 병원별로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통일
11.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기준 완화
12. 국가기술자격 시험중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정 단축
13. 청소년증 대리발급 신청 허용
14. 공공주택 내 복리시설을 어린이집·경로당으로 용도변경 허용
15.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16.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의 용도제한 완화
17. 녹지지역에서 지역간 연결도로 설치시 완충녹지 의무설치 폐지
1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사용연장(2년→3년)
19.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이축)시 준공전 용도변경 허용
20. 소규모 자투리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21.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 허용
22.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 가능사유 확대
23.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24. 보험금 청구를 위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25. 납세고지서 QR코드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26. 개인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정보이용 동의 시 불편해소
27. 해외 직접구매 물품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28. 해병대 병적증명서 '군별'란을 '해군'에서 '해군(해병대)'로 개선
29.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

Ⅱ. 자영업자 규제개선 (23건) 33

30. 막걸리 판매용기의 용량제한(2ℓ) 개선
31.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 허용
32. 주유소 부대시설 용도제한 등 완화
33. 농자재 판매대장 기재항목 중 개인정보 의무기재부분 개선
34. 유치원 학급편제를 총 학급수 및 총 정원으로 인가
35.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36.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용품 구매업무 민간위탁 허용
37.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인정요건 완화
38.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39. 음향기기 안전인증 부담 완화
40.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41. 임상병리사에 대해 시약도매업무 진입허용
42. 약사의 위생복 의무착용 규정 폐지
43. 무사고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부담 완화
4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
45. 부동산개발업 비등록사업자의 부동산 공급행위 제한 완화
46.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47.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48.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49. 조리장 시설 공동사용 거리제한 폐지
50. 식품 소분·재포장 판매대상 품목확대
51.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판매 대상식품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52.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압류해제 절차 개선

Ⅲ. 기업 규제개선 (28건) 59

53. 정책자금 용자 경험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용자제한 폐지
54.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확대
55.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 금액기준 완화
56. 소프트웨어 사업발주시 기술자 기술등급자료 요구 금지
57.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사전허가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완화
58. 택시 상부 표시등에 광고 허용
59.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신고) 시 개인정보제공 의무 개선
60. 사료검정 인정기관 범위 확대
61. 가축분(우분) 퇴비의 염분 함량기준 완화
62. 전시장치사업자 공공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63.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 수 변동시 신고의무 및 수수료 납부 폐지
64. 환경위해성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인 재활용업 사업 등록 허가
65. 골재선별 파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의 재활용 허용
66.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67.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 경력에 대한 신고기간 개선
68. 살수차 등 일시적 하천수 이용 신고제로 개선
69. 선박용물건의 검정기관간 검정결과 상호인정
70. 연안여객선에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 의무화
71. 여객관리(서비스) 승무원 정원제도 도입
7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절차 간소화
73. 경비업 도급실적에 따른 허가취소 규정 개선
74.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공정성 확보
75. 수입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보수작업 신고절차 간소화
76. 특허보세구역(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시 물동량요건 제도 개선
77. 세관별로 상이한 위약수출 처리 절차 개선
78.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류 간소화
79.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쇼핑몰 등록요건(납품실적) 완화
80. 채석단지 변경신고 면적범위 완화

I. 국민생활 규제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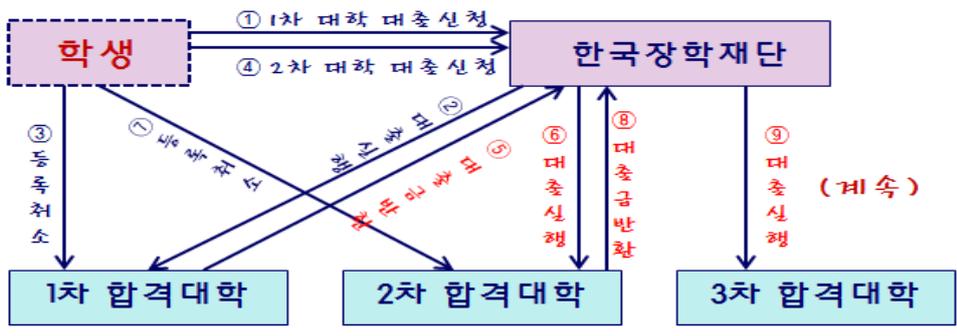


소관부처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19)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인 고등학생의 재학사실을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한 후 교과서 구입비용('14년기준, 129,500원)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학생의 재학사실은 학교에서 학적정비가 완료되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해 교과서 구입비용 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기초수급자인 학생은 3월 중순 이후 교과서 구입비용을 받을 때 까지는 현책을 사용하거나 자비로 교과서대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인 고등학생이 희망할 경우, 2월말에 교과서를 먼저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교과서 구입 지원이 이뤄진 이후에 비용정산이 이뤄지도록 지급절차 개선 <table border="1" data-bbox="347 999 1422 1429"> <thead> <tr> <th data-bbox="347 999 882 1037">현 행</th> <th data-bbox="887 999 1422 1037">개 선(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7 1043 882 142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 학적 정비(3월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지자체→학생) 재학사실 확인 후 교과서대 지원(3월중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생) 교과서 구입(3월중순이후)</div> </td> <td data-bbox="887 1043 1422 142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학생) 교과서 선(先) 지급(2월)</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 학적 정비(3월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지자체→학생) 재학사실 확인 후 교과서대 지원(3월중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생) 교과서대 납부(또는 비용 정산)</div> </td> </tr> </tbody> </table>	현 행	개 선(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 학적 정비(3월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지자체→학생) 재학사실 확인 후 교과서대 지원(3월중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생) 교과서 구입(3월중순이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학생) 교과서 선(先) 지급(2월)</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 학적 정비(3월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지자체→학생) 재학사실 확인 후 교과서대 지원(3월중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생) 교과서대 납부(또는 비용 정산)</div>
현 행	개 선(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 학적 정비(3월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지자체→학생) 재학사실 확인 후 교과서대 지원(3월중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생) 교과서 구입(3월중순이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학생) 교과서 선(先) 지급(2월)</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학교) 학적 정비(3월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지자체→학생) 재학사실 확인 후 교과서대 지원(3월중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학생) 교과서대 납부(또는 비용 정산)</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 ~'14. 8월 • 기초수급자 교과서 지급 절차 개선안 마련 : '14. 10월 • '15년도 기초수급자 교과서대 지원 : '15. 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 대상인 고등학생(약 7만6천명)이 학기가 시작될 때 새 교과서를 받아 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관부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044-203-6271)
관련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자금 대출은 한 사람에게 같은 학기중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신입생은 대학 등록-취소를 반복할 경우 이미 받은 대출의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 추가 대출이 가능 • 이로 인해, 추가합격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반환이 지연되면, 등록마감 기한 내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등록금(반환금 또는 추가합격대학 등록금) 준비에 부담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에 한하여, 1차 합격 대학 대출금(등록금)이 반환되기 전에 추가 합격대학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1차 합격시 대출금(등록금)은 장학재단이 대학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 방식으로 개선
------	---



1. 대출실행 (⑥ ⑨)은 대출금 반환(⑤ ⑧)이 안되었더라도, 우선 실행하고 추후 학교측으로부터 반환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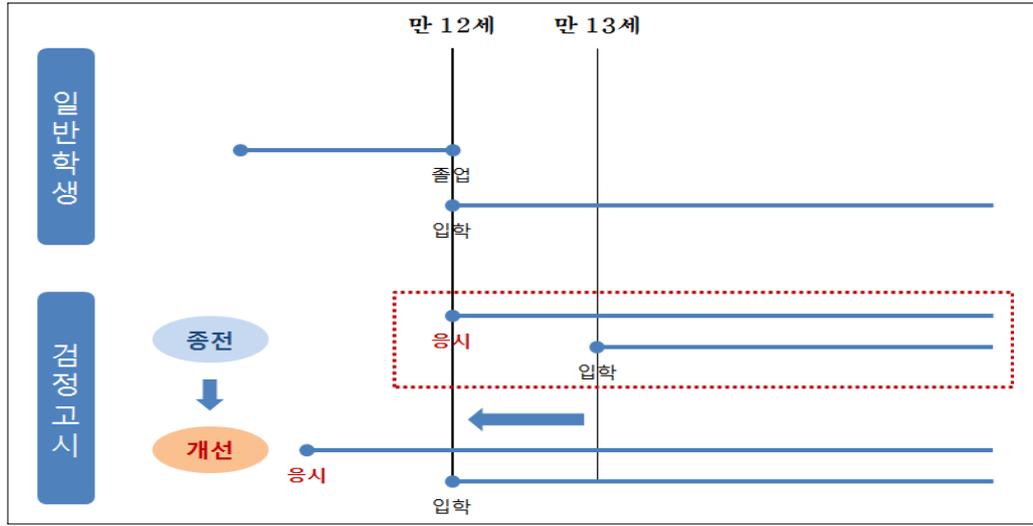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 개선 방안 마련 및 적용 : '14. 7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을 이미 받은 학생이 대학에 추가합격한 경우, 1차 대출금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어, 촉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짐 • 1차 합격대학에서 기대대출금을 받아서 장학재단에 상환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 <p>※ ('14.1학기) 전체 신입생 대출자수 101,445명, 학교이동 대출자수 3,167명</p>
------	---

소관부처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4523)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2개 검정고시 규칙(교육부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초등학교 졸업학력) 자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통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 • 이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이수 학생보다 1년 이상 늦게 진학하게 되는 문제발생 •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은 중입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완화하려 하여도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 때문에 개선이 힘든 실정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던 중입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
-------------	--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개정 : '14. 9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15. 1월 • 검정고시 관련 부령 폐지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정 : '15. 6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관련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 개통시 통신사 및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필요없는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의무 가입하도록 유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외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하기 위해 「이동전화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div data-bbox="363 869 1401 127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고가 요금제 등 강제 계약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체결을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예) LTE 7만 2천원 요금제 3~6개월 의무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 제한</p>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 : '14. 5월(국회통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14. 10. 1~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외의 불공정한 개별계약을 금지하고, 이미 체결한 개별계약에 대해서도 무효화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 미래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스마트 초이스, www.smartchoice.or.kr)'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기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02-2100-2925)
관련법령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 X(Apple社의 Mac PC 운영체계) 이용자는 IE(Internet Explorer)만 사용 가능한 ActiveX 위주로 지원되는 정부 웹사이트 이용 불편 •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신규 웹사이트 구축 시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각종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ActiveX를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래 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전자서명(공인인증서), 키보드 보안 등의 일부 ActiveX에 대한 대체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되는 대로 각종 전자정부서비스에 반영 예정 • ActiveX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능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00여개 공공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홈페이지 전수검사 : '14. 7월 • 전수검사 결과를 토대로 ActiveX 대체방안 수립 및 지침시달 : '14. 10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만족도 제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044-201-1861)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044-201-3625)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면서 동시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아산호), 해당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목적 외 사용승인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함 • 동일 허가내용에 대해 양법에 의한 허가절차와 사용료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농식품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목적외 사용 승인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간 협의 : '14. 5월 ~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마련 : '14. 8월 • 농어촌정비법 개정 : '14. 1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다른 법에 의한 허가를 의제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시 타법에 의해 사용허가가 의제되는 점용료 및 수수료 등은 감면하여 사용자의 이중 부담 완화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4)												
관련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였더니 농지원부를 추가 요구 - 농업경영체등록 자체가 농업인임을 확인한 바, 농지원부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규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인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이종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농협의 『조합원·준조합원 관리업무 방법』을 개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시 농업인 자격유무 확인 ></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 현 행 ></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 개 선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농지원부</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자경증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경영체등록확인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축산업등록증</td> <td></td> <td></td> </tr>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귀농지원사업에서도 '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인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원부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 	< 현 행 >		< 개 선 >	농지원부			자경증명	⇒	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 현 행 >		< 개 선 >											
농지원부													
자경증명	⇒	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제 통합 세부방안 수립 : '14. 6월 • 농협법 시행령, 농협 업무지침 등 개정 : '14. 하반기 • 귀농지원사업 등 추진 시 경영체등록확인서로만 농업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 협조 공문 시달 : '14.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증명 이중 발급에 따른 각종 수수료 부담 감소 • 행정기관 방문 및 각종 증명서 구비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4)			
관련법령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회사의 영업용 차량 포함)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지만 민간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출입을 이유로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 적용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민간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공공기관 출입시 승용차 요일제 의무적용 대상</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현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근무자 차량 · 민원인 차량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개정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근무자 차량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민원인 차량</p> </td> </tr>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 현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근무자 차량 · 민원인 차량 	▶	<p style="text-align: center;">< 개정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근무자 차량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민원인 차량</p>
<p style="text-align: center;">< 현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근무자 차량 · 민원인 차량 	▶	<p style="text-align: center;">< 개정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소유 차량 및 근무자 차량 <p style="text-align: center;">* (예외) 민원인 차량</p>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14. 6월 개정 고시 시행 : '14.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 요일제의 합리적 적용에 따라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의 불편과 승용차 요일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044-202-3453)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7 및 별표8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배치는 강제하지 않고 있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촉탁의를 선발하기가 어려워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는 불법의료행위로 인정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물리치료실' 의무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관이 자율적으로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를 두는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 노인복지관 시설·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변경(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30%;">기존</th> <th style="width: 30%;">변경</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시설·직원 배치기준</td> <td>물리치료실·물리치료사의 설치 및 배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삭제</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td> </tr> <tr> <td>운영기준</td> <td>물리치료 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td> <td>자율적으로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를 두는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시설·직원 배치기준	물리치료실·물리치료사의 설치 및 배치	삭제	변경	운영기준	물리치료 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	자율적으로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를 두는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	변경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시설·직원 배치기준	물리치료실·물리치료사의 설치 및 배치	삭제	변경										
운영기준	물리치료 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	자율적으로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를 두는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	변경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4. 6월 입법예고 : '14. 8~9월 개정안 시행 : '14. 12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의 의무 설치 및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여가복지사업 활성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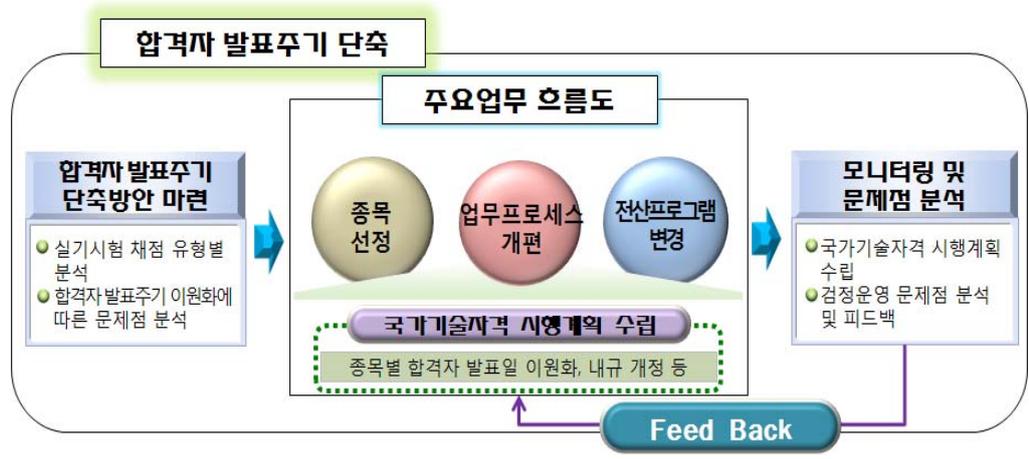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044-202-2494)
관련법령	약사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의료기관별로 차이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45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등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앞으로,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에 대한 현황파악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용 등의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등 제증명서 종류·서식·비용 등 현황 조사 : '14. 6~10월 • 제증명서 종류 및 표준서식·상한선 마련(명칭·서식·비용 등) : '14. 1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을 통일함으로써 국민편의 및 형평성 제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7)
관련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정해진 훈련기간과 그 시간에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나, 교대제 근무자와 같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에 참여가 어려워 수료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제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정해진 훈련기간과 시간에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훈련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대체 수강을 한 경우는 출석률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기관, 지방관서,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14. 7월 • HRD-Net시스템 개편 및 운영지침 마련 : '14. 12월 • 제도 시행 : '15. 1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훈련출석 기준을 교대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함으로써, 훈련취약계층인 교대제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기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종목이 같은 날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증이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이 장기간 합격자 발표일(35일 정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발표주기 단축 종목 선정,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프로그램 변경을 통해 현지 채점형 실기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주기를 단축
-------------	--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채점형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주기 단축방안 마련 : '14. 6월 •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프로그램 변경 : '14.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 기간 필요(약 5개월) • 합격자 발표주기 단축 시행 : '15. 1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발급 및 인허가 등과 관련이 높은 자격의 경우, 생업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시간 단축에 따른 취득자의 불편해소 및 자격수당 등의 조기혜택이 가능하고, 구직자는 입사시험 등 자격증이 필요한 취업요건이 단축
-------------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관련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청소년증 발급절차는 청소년이 직접 주소지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생인 경우 수업시간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신청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개선 방안 마련 : '14. 9월 • 관계기관 협의(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 '14. 10월 • 행복e-음 시스템 개선 : '15. 3월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15.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절차 개선으로 신청인의 편의 제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확충하기 위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경우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거 최초 준공시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행위허가(용도변경)시에는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과도한 규제 및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5년 상반기 •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 '15년 하반기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15년 말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및 경로당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어린이 및 노인이 있는 약25만 세대의 편익증진 예상 * 25만 세대(공동주택 860만 세대의 3% 추정)

<p>소관부처</p>	<p>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건축정책과 (044-201-3764)</p>
<p>관련법령</p>	<p>건축법 제60조</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0조제3항은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도로의 결빙방지, 도시 미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일명 도로 사선제한) •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오히려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의 규제로 작용하여 획일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고, 건축물의 가치를 하락시켜 건축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장려하고 건축물의 가치 증대를 통한 건축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법」을 개정하여 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폐지 <div data-bbox="391 1019 1396 153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음</p>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 '14. 7월 • 건축법 개정안 규제심사 : '14. 9월 • 건축법 개정안 법제심사 : '14. 11월 • 건축법 개정안 국회제출 : '14. 12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선 기준 폐지로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 등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해당 지역 용적률을 충족하여 건축할 수 있는 등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

<p>소관부처</p>	<p>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녹색도시과(044-201-3748)</p>
<p>관련법령</p>	<p>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은 주거용도로만 개발(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이 허용됨에 따라, 지역형편상 상업·공업 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있어도 개발할 수 없어 토지주 및 거주민의 불편 가중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인접하고, 주거 외의 상업·공업기능 등 토지이용수요가 있는 경우에 준주거지역, 준공업 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마련 : '14. 4월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 '14. 5월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시행 : '14. 6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p>소관부처</p>	<p>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도시정책과 (044-201-3716)</p>																																		
<p>관련법령</p>	<p>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지역에서 지역간 연결도로를 만들 경우,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부족 등으로 해당 완충녹지가 조성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div data-bbox="443 884 1324 1534" style="text-align: center;"> <p>완충녹지 시도별 면적(m²)</p> <table border="1"> <caption>완충녹지 시도별 면적(m²)</caption> <thead> <tr> <th>시도</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td>서울시</td><td>3,874,829</td></tr> <tr><td>부산시</td><td>7,329,363</td></tr> <tr><td>대구시</td><td>7,334,589</td></tr> <tr><td>인천시</td><td>8,707,718</td></tr> <tr><td>광주시</td><td>2,639,445</td></tr> <tr><td>대전시</td><td>2,537,057</td></tr> <tr><td>울산시</td><td>6,922,490</td></tr> <tr><td>세종시</td><td>1,453,539</td></tr> <tr><td>경기도</td><td>29,085,483</td></tr> <tr><td>강원도</td><td>4,915,474</td></tr> <tr><td>충청북도</td><td>8,940,060</td></tr> <tr><td>충청남도</td><td>10,088,157</td></tr> <tr><td>전라북도</td><td>6,352,669</td></tr> <tr><td>전라남도</td><td>11,648,262</td></tr> <tr><td>경상북도</td><td>12,449,138</td></tr> <tr><td>경상남도</td><td>13,633,233</td></tr> </tbody> </table> </div>	시도	면적(m ²)	서울시	3,874,829	부산시	7,329,363	대구시	7,334,589	인천시	8,707,718	광주시	2,639,445	대전시	2,537,057	울산시	6,922,490	세종시	1,453,539	경기도	29,085,483	강원도	4,915,474	충청북도	8,940,060	충청남도	10,088,157	전라북도	6,352,669	전라남도	11,648,262	경상북도	12,449,138	경상남도	13,633,233
시도	면적(m ²)																																		
서울시	3,874,829																																		
부산시	7,329,363																																		
대구시	7,334,589																																		
인천시	8,707,718																																		
광주시	2,639,445																																		
대전시	2,537,057																																		
울산시	6,922,490																																		
세종시	1,453,539																																		
경기도	29,085,483																																		
강원도	4,915,474																																		
충청북도	8,940,060																																		
충청남도	10,088,157																																		
전라북도	6,352,669																																		
전라남도	11,648,262																																		
경상북도	12,449,138																																		
경상남도	13,633,233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 '14. 6월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14. 7월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14. 8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 완충녹지 설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실 건축정책과 (044-201-3764)
관련법령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등 특정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를 조건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그 절차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서 유지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이에 따라,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행정적 절차의 번거로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유지기간을 완화하거나, 유지기간이 명확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연장신고 없이 공사완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존치기간을 5년,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려우나,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 없이 공사완료시까지 사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4.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 '14.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심사 : '14.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14. 10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 감소 등에 따라 국민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녹색도시과(044-201-3745)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주택을 새로 짓거나 옮겨지을 경우 주택 사용승인 이전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여 경제적인 비용 증가 등 주민 불편 가중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특별히 허용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용도변경을 굳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에만 가능하게 한 것은 운영상 실익이 없음 • 따라서, 용도변경의 입법취지와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으로 사용승인 받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가능한 것으로 허용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신축 시 사용검사 전 용도변경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 : '14.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관련 비용 절감 등 주민부담 완화

<p>소관부처</p>	<p>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녹색도시과 (044-201-3748)</p>
<p>관련법령</p>	<p>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요건은 규정상(「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도로(중로2류 + 폭 15m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의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된 자투리 토지(1만㎡ 미만)에만 한정하여 토지이용의 불합리성 초래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div data-bbox="363 887 1402 164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The image is an aerial view of a residential area. A blue line outlines a '개발제한구역(GB)'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A green line indicates a '소로(8m)' (8m road). A yellow label points to a '제2종 일반주거지역' (2nd-story general residential area). The area shows a mix of greenery and buildings.</p>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 '14. 5월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 '14. 6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상당수 국민의 불편 해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녹색도시과 (044-201-3745)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허용 •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신축에 필요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9호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유권해석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 허용 관련 유권해석 공문 지자체 통보 : '14. 4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주택 신축 활성화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1)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의 임의매각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만 일반매각이 가능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장기간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임의매각 시 적용되던 벌칙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위반 시 벌칙 완화(형벌·벌칙 → 과태료)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임대주택 매각요건 확대(임대사업자의 범위, 장기미임대 주택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규 제</th> <th style="width: 55%;">현행 및 개선</th> <th style="width: 10%;">일정</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부도·파산의 경우에는 일반매각 가능 ·(개선)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장기미임대, 철거 예정’ 임대주택도 매각 허용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매각제한 위반 시 벌칙 적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과태료 전환(3천만원 이하) </td> <td style="text-align: center;">~'14.7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주택법 시행령</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28 공포·시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임대주택법</td> </tr> </tbody> </table>	규 제	현행 및 개선	일정	비 고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부도·파산의 경우에는 일반매각 가능 ·(개선)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장기미임대, 철거 예정’ 임대주택도 매각 허용 	-	-	매각제한 위반 시 벌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과태료 전환(3천만원 이하) 	~'14.7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14.5.28 공포·시행	임대주택법
규 제	현행 및 개선	일정	비 고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부도·파산의 경우에는 일반매각 가능 ·(개선)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장기미임대, 철거 예정’ 임대주택도 매각 허용 	-	-														
매각제한 위반 시 벌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선) 과태료 전환(3천만원 이하) 	~'14.7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14.5.28 공포·시행	임대주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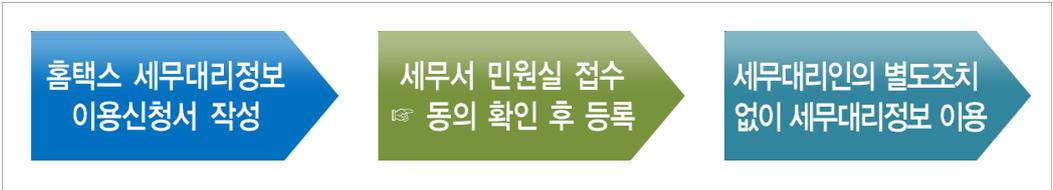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14. 2월 임대주택법 및 하위법령 개정 : '14. 3월 ~ 7월 ※ 임대주택법 개정 공포·시행('14.5.28),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14.7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56-9876)
관련법령	한국거래소 내부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은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과 다르게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체결 시점간 가격변동이 심하고,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여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불편 초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투자 위험이 높은 관리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매매체결을 제한해온 측면이 있으나, • 시장 참여자들의 개선요구가 높은 점, 그리고 이미 관리종목 지정 자체로 고 위험 선호 투자자들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위험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코스피 시장 관리종목에는 접속매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과 동일하게 접속매매 방식(장중 매매체결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되는 호가에 따라 실시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제도 변경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 : '14. 8 ~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제도 변경 : '15. 1. 1 부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체결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가격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관리종목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 • 다만, 관리종목 투자는 상장폐지 및 과도한 가격변동 위험을 수반한 고위험 투자기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p>소관부처</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42)</p>
<p>관련법령</p>	<p>도로교통법시행규칙</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수급 부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시 인감증명서를 확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사실 확인 자료로만 사용되고, 보험사는 발급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 발급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 개선 필요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급대상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 또한, 발급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대리 발급사실을 문자메세지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div data-bbox="359 1041 1412 137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re> graph LR subgraph "개선전" A1[민원인] --> B1[대리인] B1 --> C1[민원인 인감증명서] C1 --> D1[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end subgraph "개선후" A2[민원인] --> B2[대리인] B2 --> C2["민원인 신분증(사본) ※민원인에게 대리발급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C2 --> D2[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end A1 -.-> A2 B1 -.-> B2 C1 -.-> C2 D1 -.-> D2 </pre>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선방안 마련 : '14. 6월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경찰위원회 상정 : '14. 7월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입법예고 : '14 7~8월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법제처 심사 : '14. 10월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 '14. 12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1,653만원 절감 등 비용절감 및 국민 편의 개선효과 창출 ※ '13년 대리인 발급 27,538건 × 인감증명 발급비용 600원

소관부처	국세청 징세과 (02-397-1658)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고지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로 표기되고 있으나 고지서 하단에 표기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하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여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R코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성 제고 목적과 수납처리의 필수적 정보 확인 수단으로 일반우편 송달고지서의 QR코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할 예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 개선 : '14.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약 1개월) • 제도개선 시행 : '14. 6월 <p style="text-align: center;">< QR코드 개선안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QR코드 인식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당초</td> <td style="text-align: center;">012610114047410000401197601010200326 770101-1234567 (주민번호)</td> </tr> <tr> <td>개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012610114047410000401197601010200326 770101-0000000 (생년월일)</td> </tr> </tbody> </table>	구분	QR코드 인식내용	당초	012610114047410000401197601010200326 770101- 1234567 (주민번호)	개선	012610114047410000401197601010200326 770101- 0000000 (생년월일)
구분	QR코드 인식내용						
당초	012610114047410000401197601010200326 770101- 1234567 (주민번호)						
개선	012610114047410000401197601010200326 770101- 0000000 (생년월일)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서상의 QR코드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기여 						

소관부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2-397-1735)
관련법령	집행개선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3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한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 가능 •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세무신고에 애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동의 방식 이외에 납세자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수임등록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납세자의 불편 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납세자 수임동의 절차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작성] --> B[세무서 민원실 접수 동의 확인 후 등록] B --> C[세무대리인의 별도조치 없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pre>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개발 : '14. 4월 • 시행 : '14. 4월말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에도 서면신청으로 세무대리인의 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 동의가 가능

소관부처	관세청 통관기획국 통관기획과(042-481-7972)
관련법령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구매가 인터넷 확산, 국제운송 효율화에 따라 1조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 ('12년 704백만불 → '13년 1,036백만불(47% ↑)) •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12년 1,181건 → '13년 1,551건(31% ↑)) <p style="text-align: center;">< 해외 직접구매 피해사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반품수수료 부당청구</th> <th>취소·환불 지연</th> <th>배송지연 ·오배송</th> <th>제품불량 ·파손</th> <th>사업자 연락두절</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건수 (비율)</td> <td>315건 (29.5%)</td> <td>281건 (26.4%)</td> <td>202건 (19.0%)</td> <td>126건 (11.8%)</td> <td>68건 (6.4%)</td> <td>74건 (6.9%)</td> <td>1,066건 (100%)</td> </tr> </tbody> </table> <p>* 자료 : 한국소비자원('13. 7월 ~ '14. 1월)</p>	구분	반품수수료 부당청구	취소·환불 지연	배송지연 ·오배송	제품불량 ·파손	사업자 연락두절	기타	합계	건수 (비율)	315건 (29.5%)	281건 (26.4%)	202건 (19.0%)	126건 (11.8%)	68건 (6.4%)	74건 (6.9%)	1,066건 (100%)
	구분	반품수수료 부당청구	취소·환불 지연	배송지연 ·오배송	제품불량 ·파손	사업자 연락두절	기타	합계									
건수 (비율)	315건 (29.5%)	281건 (26.4%)	202건 (19.0%)	126건 (11.8%)	68건 (6.4%)	74건 (6.9%)	1,066건 (100%)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구매 물품을 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받아 관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수출신고 관련 개정 고시 : '14. 7월 • 제도개선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 기간 필요(약 3개월) • 개인수출신고 제도 시행 : '14. 하반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p>소관부처</p>	<p>병무청 사회복무국(042-481-2881)</p>
<p>관련법령</p>	<p>시스템 개선 및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개정</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적증명서 발급 시 '군별'란에 육군, 해군, 공군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그동안 해병대 전역자는 '군별'란에 '해군'으로 표기되어 병적증명서 발급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병대 전역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병대 전역자임을 알 수 있도록 병적증명서 상의 '군별'란을 현재 '해군'에서 '해군(해병대)'로 표출되도록 개선 <div data-bbox="363 842 1406 113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국방부, 안행부) 실무협의 : '14. 5월 해병대 사령부 전역자 자료 인수 : '14. 6월 안전행정부 시스템 개선 : '14. 하반기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개정 : '14. 12월 시범운영 및 실시 : '15. 상반기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만 해병전역자의 불만 해소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

소관부처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02-398-610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상,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 따라서 기준시가 6천만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요건(1억원 미만)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에는 부양 자녀·소득·재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해 세법개정 추진 •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 '15년부터는 주택가격(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가액 기준 1억원 미만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요건 세법 개정 : '14. 1월(기개정) • 개정세법 시행시기 : '15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완화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Ⅱ. 자영업자 규제개선



소관부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2-397-1852)
관련법령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막걸리는 무자료 불법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용량 판매용기의 사용을 제한(2ℓ이하) • 그러나 판매용기의 용량제한으로 제조원가가 증가하고 대용량 용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주류유통을 예방하면서도 막걸리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할 경우 2ℓ를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용기제한 완화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고시 행정예고 중 : '14. 6월 • 고시 개정 : '14. 7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걸리 판매용기의 용량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 기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044-202-2708)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4대 보험료는 현금납부만 가능하며, 공단지침으로 지역가입자는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월액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카드납부 가능 • 자금이 부족한 직장가입장의 사업주는 카드납부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납부에 불편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14.9.25 • 국민연금법 개정안 : 국회계류 중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납부의 불편 해소를 통해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 도모

<p>소관부처</p>	<p>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02-2100-5257)</p>
<p>관련법령</p>	<p>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소 내 부대시설 허가시 소비자의 안전을 이유로 부대시설의 용도·위치·면적의 제한이 많아 주유소의 경영애로 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제한)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휴게음식점과 대형전자제품판매점은 허용되나, 미용실 등 다수 업종은 입점 불가 (위치)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은 화재시 대피 등의 이유로 1층에만 영업 허가 (면적) 부대시설에 대하여 면적을 500㎡로 제한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소 부대시설로 허용되는 점포의 용도, 입점 층수, 면적 제한을 개선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의 범위에 관한 업무지침 : '14. 4. 21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4. 하반기 개정·공포 예정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소 부대시설의 활용 및 면적 확대를 통해 주유소 경영 적자 해소 등 주유업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 면적확대 등을 통한 주유업계 경제 활성화(약 150억원)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 (02-710-6603)
관련법령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농자재판매대장은 구매자의 농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으로 농민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농자재상에게 알려주기를 꺼리는 상황으로, 판매상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해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판매대장 기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다툼이 발생하는 등 애로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자재 판매대장(농 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판매기록표')의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는 구매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대체하도록 추진 • 다만, 어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판매기록표' 서식의 기재항목인 '주민등록번호'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로 개정하여 둘 중 선택기제할 수 있도록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서식 개정 및 시행 : '15. 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판매상의 판매기록표 작성의 편의 제고 및 구입하는 농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소관부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학급편제는 유치원 규칙에 포함된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장이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시도별로 총 학급수와 총 정원만 인가를 하는 기관도 있고, 개별 학급수와 학급별 정원까지 정하는 기관도 있음 유치원 입장에서는 인가학급대로 연말 원아모집 공고 후 실제 모집한 결과, 특정 반의 원아가 없거나 반대로 많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어려워 유치원 운영에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 제3조의 교육받을 권리 보호와 유아교육법 제3조의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 학급, 총 정원으로 인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 <p style="text-align: center;">< 유치원 규칙 변경(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기존</th> <th style="width: 40%;">변경</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학급 편제</td> <td>제○조 ○○유치원 학급은 5학급(만3세반 1학급, 만4세반 2학급, 만5세반 2학급)으로 한다</td> <td>제○조 ○○유치원 학급은 5학급으로 한다. * 연령별 학급 편제부분 삭제</td> <td>변경</td> </tr> <tr> <td>정원</td> <td>제○조 ○○유치원 정원은 △△명으로 한다.(단, 해당 학년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따른다.)</td> <td>제○조 ○○유치원 정원은 △△명으로 한다.(단, 해당 학년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따른다.)</td> <td>현행 유지</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학급 편제	제○조 ○○유치원 학급은 5학급(만3세반 1학급, 만4세반 2학급, 만5세반 2학급)으로 한다	제○조 ○○유치원 학급은 5학급으로 한다. * 연령별 학급 편제부분 삭제	변경	정원	제○조 ○○유치원 정원은 △△명으로 한다.(단, 해당 학년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따른다.)	제○조 ○○유치원 정원은 △△명으로 한다.(단, 해당 학년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따른다.)	현행 유지
구분	기존	변경	비고										
학급 편제	제○조 ○○유치원 학급은 5학급(만3세반 1학급, 만4세반 2학급, 만5세반 2학급)으로 한다	제○조 ○○유치원 학급은 5학급으로 한다. * 연령별 학급 편제부분 삭제	변경										
정원	제○조 ○○유치원 정원은 △△명으로 한다.(단, 해당 학년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따른다.)	제○조 ○○유치원 정원은 △△명으로 한다.(단, 해당 학년도 ○○교육청 학급당 원아수 기준을 따른다.)	현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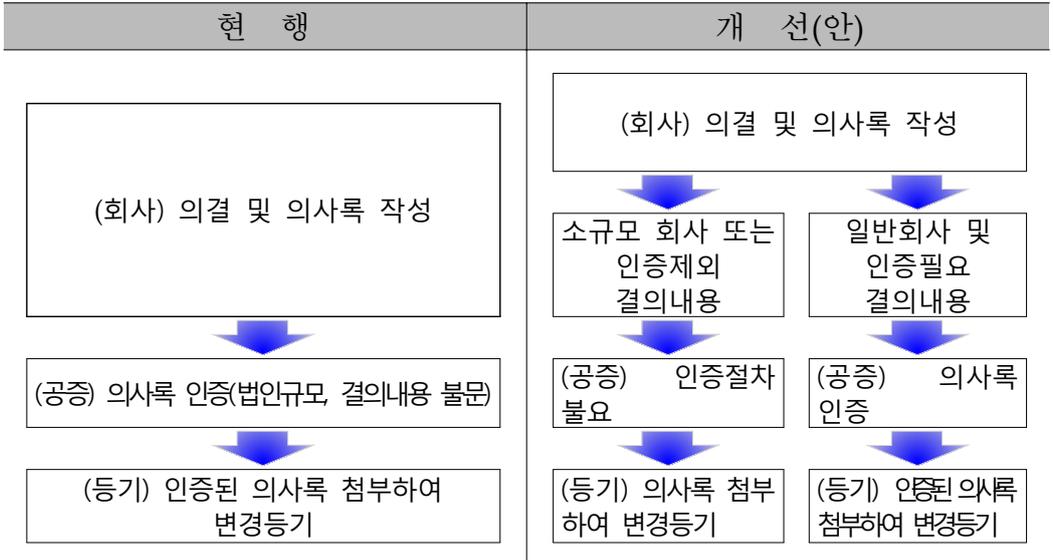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도교육청 기 공문 발송 : 유아교육정책과-2395(2014. 5. 8.)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취학수요를 학급편제에 유연하게 반영 가능
-------------	--

소관부처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1)
관련법령	공증인법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관·의사록 인증제도는 '등기할 내용에 대한 논의가 기재된 의사록'의 경우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증받도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 최초 의사록 2)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 결의 절차와 내용에 분쟁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 소규모 1인 회사 운영자나 분쟁가능성이 작은 '법인주소 변경' 등의 의사록을 인증하는 회사운영자들의 경우, 공증 부담 과도
------------------------	---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월 「법인의사록·정관 인증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주주총회 결의 내용 또는 법인 규모 등에 따른 법인의사록 인증 면제 사항 등을 검토 중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증제도개선 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	---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완료 : '14. 8월 (연구용역 시행기간 3개월) • 공증제도개선 T/F 논의 : '14. 10월 • 법제정비 : '15년 초
--------------------	--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회사의 의사록 인증이 면제될 경우 인증수수료 및 개최비용 절감(법인규모 기준) • '법인주소 변경'과 같은 분쟁소지가 작은 결의안건에 대한 인증 수수료 및 개최비용 절감 효과(결의내용 기준)
--------------------	---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02-2100-4122)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 사무는 원칙적으로 공공영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이 민간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탁하려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동 법률이 '14.3.24 제정되어 '14.9.25부터 시행 예정 (동법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제정 중) • 앞으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계약 관련 규정 마련 시, 의료법인이 민간 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업무특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경영개선 등의 효율성과 국가의 기타 공공기관 계약 훈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 <p>제 15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반영 • 시행령안 입법예고('14. 5. 16 ~ 6. 25) • 법제심사(7월~8월), 차관·국무회의(9월), 시행('14. 9. 2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및 비용절감으로 인한 경영개선 등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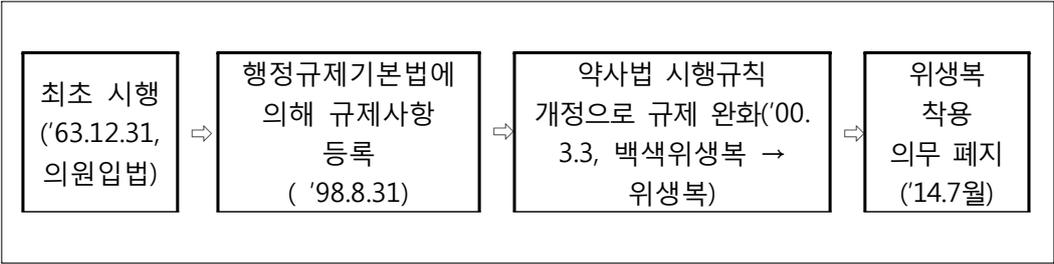
<p>소관부처</p>	<p>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43)</p>												
<p>관련법령</p>	<p>「전기공사업법 시행령」</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초급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 수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인정 • 전문건설업 등 타 업종에서는 기능사 자격증만 소지하여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에 문제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기능사 자격증만 소지하여도 초급전기공사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div data-bbox="363 996 1412 146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현 행</th> <th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개 선(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전기기능사 자격 취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전기기능사 자격 취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전기공사업무 수행(2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td> <td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td> </tr> </tbody> </table> </div>	현 행	개 선(안)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	↓	전기공사업무 수행(2년 이상)		↓	↓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현 행	개 선(안)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	↓												
전기공사업무 수행(2년 이상)													
↓	↓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 및 업계 등 의견수렴 : '14년 하반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15년 상반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15년 상반기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사 자격증은 있으나 재직 경험이 없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p>소관부처</p>	<p>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43)</p>						
<p>관련법령</p>	<p>「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감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수행 중에 퇴사하면,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교체빈도” 항목에서 감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감리원이 다른 업체로의 이직이 어려워 감리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원의 퇴직은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교체빈도” 항목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존 평가기준</td>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개선 평가기준</td> </tr> <tr>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감리원 퇴직시 “교체빈도” 항목 감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감리원 퇴직시에도 “교체빈도” 항목에 영향없음</td> </tr> </table> </div>	기존 평가기준		개선 평가기준	감리원 퇴직시 “교체빈도” 항목 감점	⇒	감리원 퇴직시에도 “교체빈도” 항목에 영향없음
기존 평가기준		개선 평가기준					
감리원 퇴직시 “교체빈도” 항목 감점	⇒	감리원 퇴직시에도 “교체빈도” 항목에 영향없음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14. 7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감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중 감리원 퇴직으로 인한 교체의 경우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됨으로써 감리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2)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기기(스피커, 앰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전기용품으로, 이를 수입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을 필요 • 소비자 안전 및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나, 판매나 대여의 목적이 아니라 수입업자가 제품을 비교·시연하기 위해서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음향기기(스피커, 앰프)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전환 후에는, 공급자가 “앰프 및 스피커”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입증하고, 공급자는 입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비치하면 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현행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품목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은 수입하거나 제조 금지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45%;"> <p style="text-align: center;">< 개정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div>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4. 7월 완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을 비교·시연하기 위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던 음향기기에 대해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품목으로 전환하여 관련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

<p>소관부처</p>	<p>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43)</p>
<p>관련법령</p>	<p>「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9조 등</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인이 경력확인을 받으려면 경력신고서에 과거의 경력사항 증명 서류를 일일이 첨부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과거 근무했던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경력사항 증명 서류 마련 과정에서 전력기술인의 불편이 가중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기존에 관리·구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감리원 배치신고 내역 등을 활용해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처리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현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전력기술인</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lex-grow: 1;"> <p>경력신고</p> <p>→</p>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회사 발행) 3.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참여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한국전력기술인협회</div>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전력기술인</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lex-grow: 1;"> <p>경력신고</p> <p>→</p> <p>(제출서류)</p> <p>경력신고서</p> <p>※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가 된 경우 현행 2~4번 서류 면제(협회 전산으로 확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width: 150px; margin: 0 auto;">한국전력기술인협회</div> </div> </div>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신고와 관련된 협회 내부규정 개정 : '14. 7월 • 내부규정 시행 : '14. 7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기술인이 경력신고시 일일이 이전 재직회사를 찾아다니는 필요가 없도록 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 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044-202-2494)
관련법령	약사법 제45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도매상에서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매업무 관리자로 약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약만을 도매하는 경우는 약사 외에도 임상병리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로 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및 검사용 시약의 조제 업무를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약도매에 한하여 임상병리사가 도매업무 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다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토대로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14. 6~7월 • 약사법 개정안 마련 : '14. 8월 • 약사법 개정 추진 : '14. 9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병리사에 대한 (시약)의약품도매상 진입장벽 완화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044-202-2489)
관련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시행규칙 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위생복을 입어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 30만원에 경고 처분 부과 • 유사직능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기공사 등)는 위생복 착용을 법령에 의해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형평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시 과태료 및 경고 처분보다는 자율적인 계도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복 착용의무의 입법취지,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 위생복 착용으로 인한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약사의 위생복 착용의무를 삭제하고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자체 활동의 일환으로 위생복 착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 '14. 5~6월 • 법제처 심사 : '14. 6월 • 공포·시행 : '14. 7월 <div data-bbox="368 1357 1422 162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re> graph LR A["최초 시행 ('63.12.31, 의원입법)"] --> B["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사항 등록 ('98.8.31)"] B --> C["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 완화('00. 3.3, 백색위생복 -> 위생복)"] C --> D["위생복 착용 의무 폐지 ('14.7월)"] </pre> </div>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관련 직종과의 형평성 제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044-201-4025)
관련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토록 규정 • 대부분 시·도가 모든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해 연간 4시간 또는 격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 시행으로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이 곤란하고, 화물운전자의 보수교육 부담 과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 부담완화를 위해, 5년 무사고인 경우 격년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무사고로 운전하면 교육을 매년 면제하도록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협의 : '14. 5월 • 보수교육 개선방안 수립·통보 : '14. 6월 • 지자체 시행 : '14. 7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부담 완화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 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관련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다년간의 부동산개발 관련 경력자도 학위나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개발 관련 학위 및 자격증이 없어도 그에 준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때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부동산개발 관련 학위 + 실무경력 3년(석사학위자는 2년) - (개선) 부동산개발 관련 학위 소지자 → 실무경력 3년(석사학위자는 2년), 부동산개발 관련 학위 비소지자 → 실무경력 7년 <p style="text-align: center;"><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 개선계획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개선</th> </tr> </thead> <tbody> <tr> <td>학위 + 실무경력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상)</td> <td>⇒</td> <td>i) 학위 + 실무경력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상)</td> </tr> <tr> <td>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실무경력</td> <td></td> <td>ii) 실무경력 7년 이상</td> </tr> <tr> <td></td> <td></td> <td>현행 유지</td> </tr> </tbody> </table>	현행		개선	학위 + 실무경력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상)	⇒	i) 학위 + 실무경력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상)	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실무경력		ii) 실무경력 7년 이상			현행 유지
현행		개선											
학위 + 실무경력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상)	⇒	i) 학위 + 실무경력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 이상)											
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실무경력		ii) 실무경력 7년 이상											
		현행 유지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4. 12월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제출 : '15. 4월 공포 및 시행 : '15. 6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개발에 대한 오랜 현장경험을 지닌 실무자들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부동산개발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비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
-------------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 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관련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 필요 • 그런데, 당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시작한 경우에는 사망,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 사정변경으로 개발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부동산 등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공급행위(판매, 임대, 사업주체변경 등)가 가능하도록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14. 6월 •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14. 1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중단에 따른 공사장의 장기방치, 원상회복, 재산권행사의 제약 등 문제 해소 기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실 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관련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사 업종인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보다 강화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등록요건 비교표 >

법령별	자본금	인력	사무실 면적
부동산개발업	3억원 이상	2인 이상	제한 없음
주택건설사업	3억원 이상	1인 이상	22㎡

개선방안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완화

이행계획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4. 12월
-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제출 : '15. 4월
- 공포 및 시행 : '15. 6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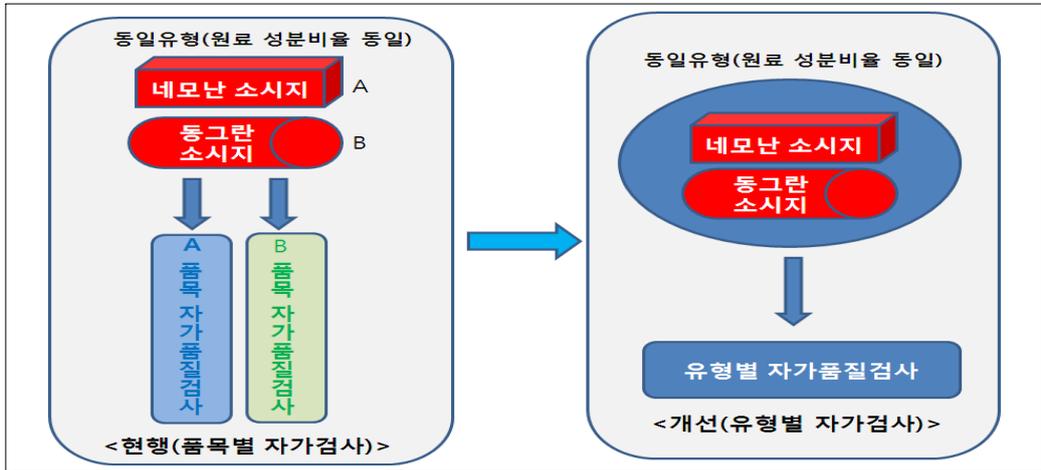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등록 진입장벽이 낮춰짐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활성화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제도권내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044-200-5741)
관련법령	선박직원법 제5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14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 신청 시 현재 선박직원법령에 따라 선원법에 따른 선원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서의 검사항목과 상당부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원건강진단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에 누락되어 있는 건강검진항목 중 선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색각 검사 결과만 추가로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건강진단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4. 10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 '14. 12월 • 입법예고 : '15. 2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 : '15. 3월 • 개정안 공포 : '15.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선원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비용 절감 기대 * 수혜대상 약 48,682명(소형선박조종사 면허보유자, 13.12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8)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043-719-3248)
관련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고시)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생산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의무 • 그러나, 축산물 가공품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검사 주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자가 불편한 실정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위해세균에 노출 시 단기간에 세균증식 및 부패가 급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현행유지가 바람직 • 다만, 원료 및 성분비율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는 품목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유형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가공업의 유형별 특성 및 위해도 등을 파악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예정
-------------	--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품질검사 유형별 실시 방안 마련 등 '14년 하반기 •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 '14. 12월 • 자가품질검사제도 관련고시 개정 등 : '15. 3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식육가공업 2,524개소, 유가공업 291개소, 알가공업 132개소)에게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
-------------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6)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과점영업자가 같은 관할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 이용 가능 • 이러한 거리 제한 규정으로 조리장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소규모 영세 제과점 영업자들의 어려움 초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과점 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할 때 조리장 공동사용에 거리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위생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운송 등이 이루어져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운송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거리 제한 규정 삭제 추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현행) 제과점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 운영 시 '같은 관할 구역 5킬로미터 이내'에 서만 조리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 제한 규정 존재</p> <p style="text-align: center;">↓ 거리제한 규정 삭제</p> <p>(개선) 제과점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 운영 시 거리 제한 없이 조리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 제한 규정 삭제</p>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5.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제과점 영업자들의 경우 조리장 공동 사용 시 거리제한 규정 삭제로 인하여 비용절감(조리인력 및 제과기계류 등의 시설 투자비용 등) 효과 기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6)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소분업의 신고대상)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소분하여 판매가 가능하나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등' 일부 품목은 소분하여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소분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소분·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소분업 영업자들의 영업 활동 제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분 제외 품목 중 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품목(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소분하여 판매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현행) 소분업 대상 제외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p style="text-align: center;">↓ 대상 확대</p> <p>(개선) 소분업 대상 제외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14. 5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4. 1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소분업 판매 대상 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인 식품소분업소 ('13년 기준, 총 13,935개소)의 소득증대 기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6)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 제37조 관련 [별표15](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식품위생법 상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식품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소비자 편의에 따라 덜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 • 또한, 실질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석제조·가공업영업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덜어서 판매 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예외규정으로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 아울러,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시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등의 시설 기준을 완화할 예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식품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 - (시설기준) 직접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모든 시설기준 준수 <p style="text-align: center;">↓ 판매 대상식품 및 시설기준 완화</p> <p>(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식품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을 허용하고 덜어서 판매 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품목 (통·병조림제품, 미생물 교차오염 우려가 있는 어육가공품 등)만 제외 - (시설기준) 직접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제조 시에만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작업장, 급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15. 6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제조하지 않고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제조 시에만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등의 시설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 시 비용 절감효과 기대 • 또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이 증가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의 경우 선택의 폭이 확대 <p>*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7,135개소('13년)</p>

소관부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2-397-1716),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9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국세징수법 제53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자등록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영업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어 체납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어려움 • 한편 체납자는 소액이라도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장기간 체납자로 남아있게 되는 등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사업이 부진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쉽게 사업자등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대상 기준을 개선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사업자 지원 •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해제를 검토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기준 개선방안 마련 : '14. 6월 •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기준 개선 및 전산시스템 반영 완료 : '14. 8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사업 부진으로 체납이 발생한 사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기업 규제개선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47)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12년부터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도입, 청년층의 창업부담 완화 • 그러나 정책자금 용자(보증) 경험자에 대해서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용자를 제한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액용자 경험이 있거나 추가 용자여력이 있는 자 역시 자금지원을 제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전용창업자금(용자상환금조정형)은 생애최초지원의 성격으로서 그동안 정책자금 용자(보증) 경험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용자를 제한 • 그러나, 기존의 정책자금 용자(보증) 경험자에 대해 용자 제한을 폐지하여 '14년 하반기부터는 기용자(보증) 받은 경우에도 총한도액(1억)내에서 추가 용자(보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경우, 2천만원의 용자를 받은 경우 청년전용창업자금 용자가 불가능했으나, 2015년부터는 기존 2천만원의 용자가 있어도, 8천만원 한도로 용자 가능 • 다만, 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채무조정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한도를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다른 자금 수요자와의 형평성(정책자금용자 경험자 고려) 등을 고려해서 총 용자한도는 현재와 같이 1억원 이내로 유지할 계획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전용 창업자금 개선방안 마련 : '14. 6월 • 청년전용자금 통합한도 적용(1억원까지) : '14. 7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살론 등 300~400만원의 소액 보증(용자) 경험자 등에 대해 용자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대

<p>소관부처</p>	<p>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도시정책과 (044-201-3716)</p>										
<p>관련법령</p>	<p>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부대편익시설이 한정되어, 기존에 설치된 터미널의 활성화, 시설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복합설치가 곤란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시설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제1·2종 근생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div data-bbox="454 873 1316 1265"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caption>면적(m²)</caption> <thead> <tr> <th>시설종류</th> <th>면적(m²)</th> </tr> </thead> <tbody> <tr> <td>여객자동차터미널</td> <td>4,483,371</td> </tr> <tr> <td>물류터미널</td> <td>4,412,606</td> </tr> <tr> <td>공영차고지</td> <td>1,084,201</td> </tr> <tr> <td>공동차고지</td> <td>1,023,833</td> </tr> </tbody> </table> </div>	시설종류	면적(m²)	여객자동차터미널	4,483,371	물류터미널	4,412,606	공영차고지	1,084,201	공동차고지	1,023,833
시설종류	면적(m²)										
여객자동차터미널	4,483,371										
물류터미널	4,412,606										
공영차고지	1,084,201										
공동차고지	1,023,833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14. 6월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4. 7월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14. 10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624개소, 면적 11,631,40m²의 자동차정류장의 활성화 및 융복합화 도모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28)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규정 • 이 법이 제정되던 1995년과는 물가, 최저임금, 시장구조 등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으나 이 조항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추정가격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14년 하반기에 감사부처(감사원, 각 중앙관서 자체감사기구 등) 및 관련기관(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14년 하반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 가능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7)
관련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12.11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폐지된 SW 기술자 등급제와 관련하여 일부 발주기관은 등급관련 자료를 여전히 요청하고 있어, 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과 기술자에게 혼선 야기

- 발주기관이 기술자 등급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6월부터 SW사업 관리 감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모니터링 실시. 이를 위해 지난 5월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에서 혼선 방지



이행계획

- 기술자 등급 적용관련 모니터링 기준 마련 : '14. 5월
- ※ 법령(SW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 부칙(제2조) 등)에 근거한 기술자 등급자료 요구 금지
- 관련 모니터링 실시 : '14. 6월 (준수여부 지속 점검)
- 추가 제도개선사항 발굴 : '14. 12월

기대효과

- 공공 발주기관의 SW사업 추진시 법제도 준수로 공공발주환경 개선과 함께 SW 산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소관부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02-2110-4058)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비전문취업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지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고용부의 고용허가와 별도로 법무부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아야함에 따른 불편과 범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처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통고 처분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고용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범칙금을 완화 이에 따라,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최초 위반자에 범칙금을 면제하고, 위반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최초 위반자 또는 감액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14.5.19.) <p style="text-align: center;"><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사전허가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완화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기존 규정 적용시</th> <th style="width: 40%;">개정 규정 적용시</th> </tr> </thead> <tbody> <tr> <td>근무처변경 허가 위반시</td> <td>고용부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법무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개시했을 경우, 고용주와 해당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기간에 따라 범칙금 처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기간 1개월 미만인 최초 위반자의 범칙금을 면제 - 위반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최초 위반자 또는 감액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감액 </td> </tr> <tr> <td>문제점 및 해결여부</td> <td>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p> 법규정을 모르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거리인 업체는 범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부담 </td> <td> <p style="text-align: center;"><해결여부></p> 처벌 규정 완화로 문제점 해소 </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규정 적용시	개정 규정 적용시	근무처변경 허가 위반시	고용부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법무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개시했을 경우, 고용주와 해당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기간에 따라 범칙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기간 1개월 미만인 최초 위반자의 범칙금을 면제 - 위반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최초 위반자 또는 감액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감액 	문제점 및 해결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p> 법규정을 모르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거리인 업체는 범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부담	<p style="text-align: center;"><해결여부></p> 처벌 규정 완화로 문제점 해소
구분	기존 규정 적용시	개정 규정 적용시								
근무처변경 허가 위반시	고용부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법무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개시했을 경우, 고용주와 해당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기간에 따라 범칙금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기간 1개월 미만인 최초 위반자의 범칙금을 면제 - 위반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최초 위반자 또는 감액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범칙금을 감액 								
문제점 및 해결여부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p> 법규정을 모르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원거리인 업체는 범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중소기업에 부담	<p style="text-align: center;"><해결여부></p> 처벌 규정 완화로 문제점 해소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지침「비전문취업자격 사증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 '14. 5. 관련 개선사항 시행 : '14. 5. 19.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범칙금 처분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위반기간에 따른 범칙금 면제 및 감면조치를 통해 부담 완화 									

<p>소관부처</p>	<p>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02-2100-1765)</p>
<p>관련법령</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6항</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광고물 표시방법은 차량의 옆면(창문 부분 제외)의 1/2 이내에 한정되고, 전기 사용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을 금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시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표시·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전문가 집단의 종합평가를 통해 도시미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전면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 <div data-bbox="379 1032 1390 159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택시 상부 표시등 옥외광고용 표준디자인(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건축물의 이미지로 고궁의 지붕 곡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표현한 디자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4. 2. 19~3. 3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14. 7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 기반마련을 통하여 신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도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0)

관련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황 및 문제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잡지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 및 신고시(변경신고 포함)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특히, 관할 시군구에서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개선방안

- 잡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대체할 예정
 ※ 유사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신문 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시,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구분	현행	변경
등록 및 신고	제5조①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5조①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제6조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 6.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6조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 6.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이행계획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4. 7월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 '14. 7~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 '14. 9~11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 : '14. 12월

기대효과

- 보도, 논평, 여론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론의 책임성 부여 등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제도 개선
- 정기간행물의 육성과 진흥방안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인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적 개선 효과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3)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 제1항에 의거 ①국공립연구기관, ②고등교육 제2조에 따른 대학,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④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4개 기관으로 제한 • 인정기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 및 개인은 분석용역기관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등 불편함 존재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검정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폐지 추진 • 시험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구비한 기관에서 사료검정을 가능토록 하여 사료의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14. 5월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 '14. 8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및 일반 업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경쟁이 촉진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 식량산업과 (044-201-1892),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031-299-2598)
관련법령	비료관리법,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물비료 염분기준은 1.8%(가축분퇴비) 이하로 비료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우분에는 사료에 염분을 첨가하고 여름철에는 소금을 먹이기 때문에 염분함량이 다른 축분보다 높음 우분의 염분을 1.8%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입통밥을 사용하게 되므로 원료 특성에 맞추어 염분함량 기준완화 필요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염분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염분이 토양에 축적될 경우 토양 입단구조가 파괴되어 토양의 물리성이 나빠지고,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토양환경을 보호하고 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염분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원료자체가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분퇴비의 원료가 되는 가축분뇨의 염분함량을 현행 1.8%에서 2.0%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협의회 개최 : '14. 4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14. 5~6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 완료: '14. 9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 퇴비 재활용 및 자원화 확대 예상 가축분뇨로 인한 농가 피해 및 농업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 염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로 비료업체 생산량 증가 및 비용절감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044-203-4034)
관련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치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모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치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로,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서류 중 “전시장치사업자 등록증”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폐지할 예정이며, 기타 다른 서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 <div data-bbox="363 869 1417 152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현행)</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1f2;">전시장치사업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출</p> <p>→</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ad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모·입찰</div> </div>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확인서 2. 전시장치사업자 등록증 3. 기타 <p>(개선)</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1f2;">전시장치사업자</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출</p> <p>→</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d9ead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공모·입찰</div> </div>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확인서 2. 기타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 '14. 1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라 전시장치사업자가 국가 공모나 입찰 참여시에 겪게 되는 서류부담을 감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법에 따라 지자체(보건소)에 '의료기관' 신고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신고 의무가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폐업 시에도 2개 기관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신고항목의 64.4%(47항목)가 건강보험법상 신고사항과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신고 항목 : 의료기관 명칭, 종류, 진료과목, 의료인 수, 병상 수 등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자원 신고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 간소화하여, 의료인 수 변경신고 등 의료자원의 중복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식을 표준화하여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되도록 법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 • 수수료 일원화 및 인하방안 등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14. 12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

소관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91)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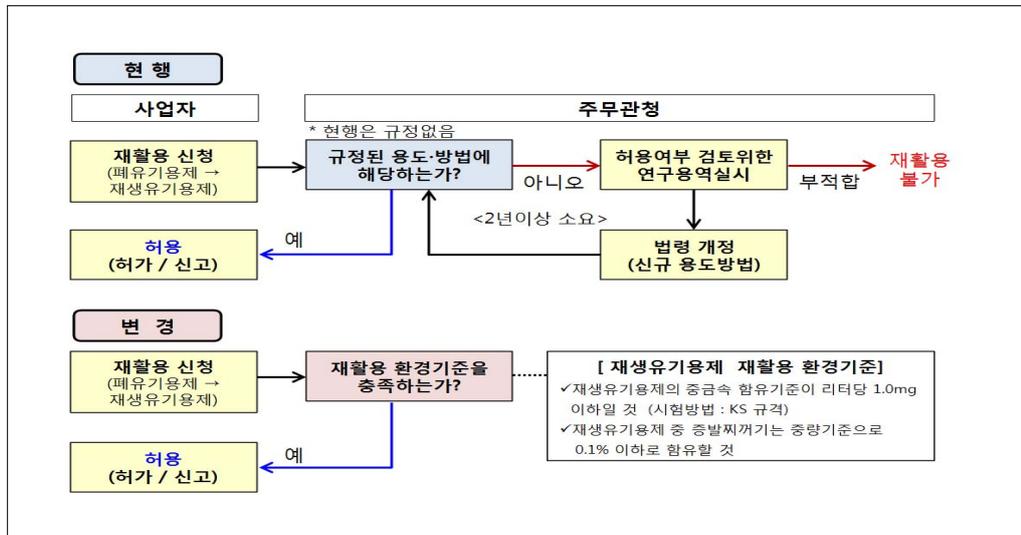
-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술 연구, 신기술 개발 등에 애로
- 폐기물 재활용 규정상 토양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활용 용도·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 확대가 어렵고 환경위해성의 사전예측과 사후저감을 위한 법적근거 미흡

- 환경위해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업종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
 - 제조공정을 거치는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 방법별로 비산먼지, 침출수, 중금속, 악취,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활용 허용
 -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환경위해성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활용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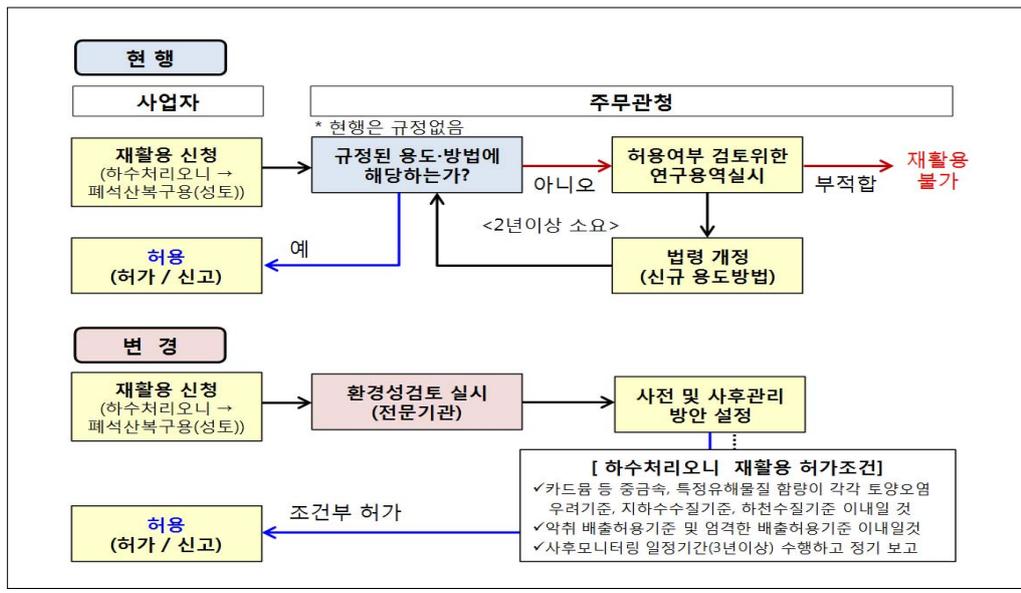
개선방안



• 네거티브형 재활용 기준 설정 사례(폐유기용제 → 재생유기용제)



• 환경성검토 실시 및 재활용 인정 사례(하수처리오니 → 석산채움재)



이행계획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14. 6월 ~ 7월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 : '14. 7월 ~ 8월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법제처제출 : '14. 9월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4. 10월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15. 하반기

기대효과

-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개발될 때 재활용 환경성 평가와 심사를 통해 환경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해당 기술의 실용화·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시장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p>소관부처</p>	<p>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91)</p>
<p>관련법령</p>	<p>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고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산에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모래류)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이와 유사한 골재선별 파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모래류)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함에 따라 많은 비용 소요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선별 파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의 재활용을 허용하여,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연구 •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고시 개정 <div data-bbox="383 784 1412 133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div> <div data-bbox="383 1355 1412 174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검토 및 국민의견 수렴 : ~ '14. 4월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 : '14. 7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업체의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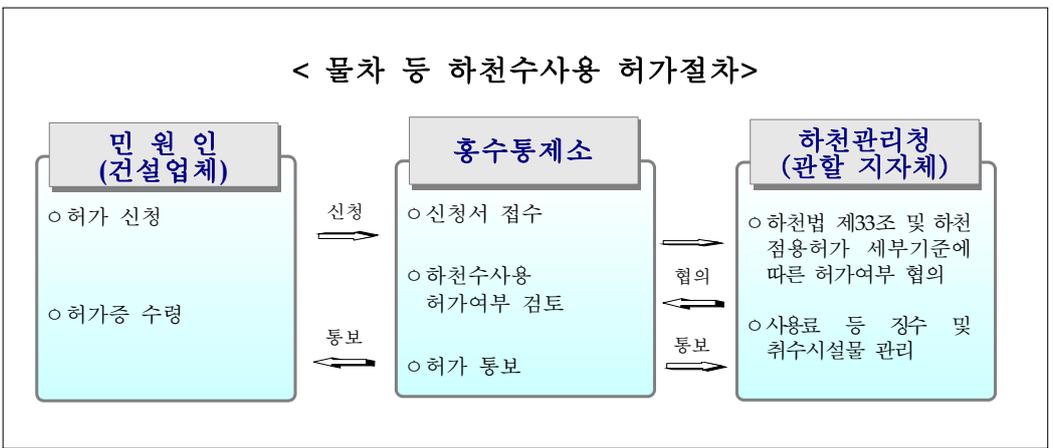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044-201-3709)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관리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재무관리상태 진단에 있어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진단자 및 처분권자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며 자본금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한 기준을 건설업체에 미리 알려 주어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1964.1.6.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일반 '기업회계기준' 보다 자산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실제 건설업 영위에 어려움 초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성을 인정하는 일부 항목(건설사 신축 미분양 상가 및 오피스, 건설업 영위 관련 임차부동산 중 실재성이 확인된 인접지역의 임차부동산 등)을 실질자산으로 평가하도록 '12년 7월 10일 기업진단지침을 이미 개정 • 추가적으로,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실질자산으로 보는 등 일부 겸업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기업진단지침 개정 예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고시 : '14. 10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건설경영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업체가 보다 쉽게 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5)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는 임의신고 사항이나,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역 또는 공사의 준공일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술 경력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등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기술경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해당 행정규칙(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 신고기간에 따른 기간(5년 이내의 기술경력)을 정하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여 관련규정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14. 5월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14. 5월 23일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 '14. 5월 23일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일 기준 제한을 개선(폐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와 건설기술자의 혼선 방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운영과 (044-201-4821)
관련법령	하천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하천수 사용허가(처리기간 22일)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기간, 취수 지점, 사용량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제거하거나 도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차(살수차 등)를 통해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기간, 취수지점, 사용량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용허가 신청자도 건설현장 책임자로 제한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차(살수차 등)를 사용하려는 자는 건설현장 책임자가 아닌 본인명의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처리기한도 당초 22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등 처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 • 또한, 내년도 하천법 개정시 물차(살수차 등)와 같이 소량·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개선방안(신청주체 확대, 처리기한 단축) 마련 : '14. 6월 • 하천법 개정안(소량·일시적 하천수사용 신고제 도입) 마련 : '15. 6월 • 하천법 개정안 국회제출 : '15. 9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차 등 일시적 하천수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의 불편 개선
-------------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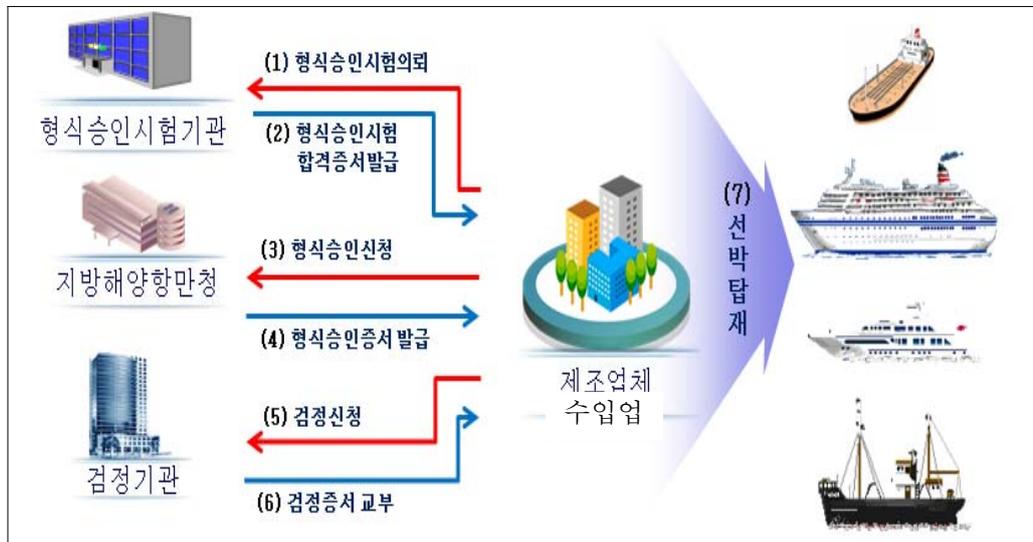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현황 및 문제점

- 선박용물건은 제조·수입업체가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하고 형식승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증서를 교부 받아야 선박에 탑재가능
- 검정증서를 교부하는 검정기관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이 각각 지정·운영
- 그러나, 두 기관에 등록된 입급선박이 달라 검사대상선박도 상이하고 검정증서도 입급선박에 한해 발급함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에서는 동일한 선박용물건에 대해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개선방안

-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2개의 검정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 중 한 기관으로부터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토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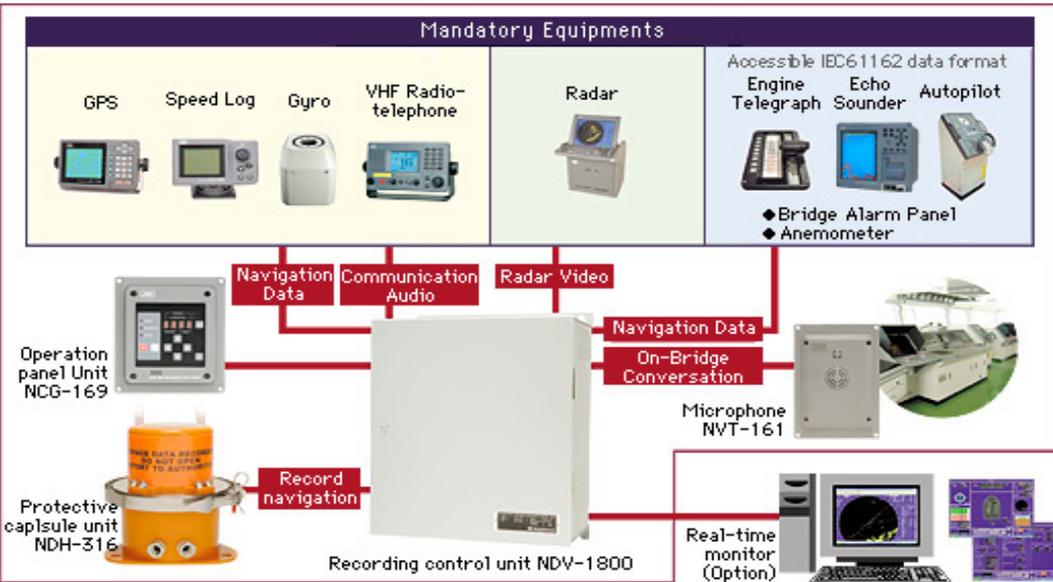


이행계획

- 선박용물건의 검정기관간 검정결과 상호인정 내부방침 : '14. 4. 14
- 유선을 통해 건의자에게 정부방침 상세 설명 : 4. 15
- 검정기관(2개)에 정부방침 문서 시달 : 5. 30

기대효과

- 연간 약 9천만원의 비용 절감 및 민원 편의 도모

<p>소관부처</p>	<p>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p>
<p>관련법령</p>	<p>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선박설비기준에 의거 국제항해 모든 여객선과 3천톤 이상 화물선에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일명 블랙박스)를 설치의무 - VDR에는 선박의 위치, 속력 등 20여 가지의 운항자료가 저장되고, 선박 침몰 시에도 회수가 용이하도록 설치 • 그러나 항해시간이 짧고 주로 연안항해를 하는 국내항해 선박에는 동 장치의 탑재 의무가 없어 해양사고 발생 시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 500톤 이상 연해구역 이상 운항 연안여객선에 대해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할 예정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방안 검토회의 : '14. 5. 2 •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관련 부처·업단체 의견조회 : 5. 26 ~ 5. 30 • 행정예고, 규제심사 및 개정안 고시 : 9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사고원인 규명과 선원의 성실 근무 및 비상시 적정대처 유도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044-200-5745)
관련법령	선원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선에서는 여객의 안전·서비스 관리를 선박직원이 담당하고 있어 선박의 비상시 많은 승객의 대피 안내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항해사, 기관사 등)외에 여객안전관리 및 서비스 담당 승무원은 선박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여객인원수에 비례한 여객관리 승무원 수를 설정하여 선박 비상시 여객 안전·서비스를 전담토록 하는 여객관리(서비스) 승무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원법 개정안 마련 : '14. 10 관계부처 의견조회 : '14. 12 입법예고 : '15. 2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 : '15. 3 개정안 공포 : '15. 6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관리 승무원 제도도입으로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관리 강화 기대(연간 여객선 이용 승객수 약 1,600만명, 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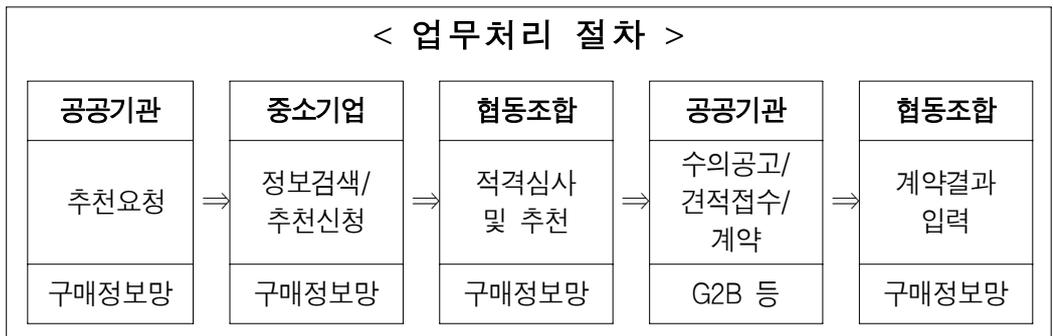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8조(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면 등록신청 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조판매업자가 선임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학력, 경력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제조판매업 등록에 어려움 <p>*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를 제출</p>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신질환자 의사진단서 제출 규정을 삭제할 예정이며,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범위를 확대하고, 비전공자에 대해서는 경력요건을 단축하는 등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현행)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관련 분야(화학과, 생물학과 등) 전공자 및 비전공자인 경우 학사 2년, 전문대 3년, 고졸 4년 경력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p> <p>(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관련 분야 확대(기존 +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화장품과학과 등 명시) 및 비전공자 경력 단일화(2년) </div>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14. 4월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4. 4. 21 ~ 5. 12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4. 6월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14. 6월 ~ 7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 넓은 취업의 기회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소관부처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31)
관련법령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1년 동안 도급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도급실적이 없지만 경비업을 계속하려는 경비업자는 자진폐업을 하고 다시 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연장하는 번거로움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개인의 생명·재산을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1년간 도급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했으나, 현장에서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감안하고 업체들의 현장의견과 규제완화 시 예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실적이 없어 허가취소 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 '14. 9월 법안마련 : '14. 10월 법령개정절차 진행 : '15.상반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실적이 없지만 경비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비업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581))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란, 5천만원 이하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대상 업체 추천 요청이 있을 시 협동조합에서 5개 이상의 업체(비조합원사 1개 포함)를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제도 •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의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기한 내 신청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순이 아니라 기한내 신청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조합에서 심사한 후 우수업체 5개 이상(비조합원사 1개 포함)을 추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4. 6~7월 • 고시 개정 : '14. 8월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 조합추천 심사제도 시행 : '14. 9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먼저 신청한 중소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공정성 여부로 시시비비가 있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신청한 모든 업체가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공정성 확보 가능
-------------	--

소관부처	관세청 통관기획국 수출입물류과 (042-481-7806)
관련법령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입식품 및 축산물 등 세관에 별도의 보수 작업 신청 절차없이 수입신고 전 현품에 한글라벨을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판매전 반드시 한글라벨을 부착하여 유통되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건별 또는 포괄로 세관에 '보수작업 신청 및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이 가능 • 이러한 불필요한 보수작업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수입업체 및 관세사 뿐만 아니라 세관의 행정업무에도 많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긴급을 요하는 의료기기의 통관을 지연시킴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기 위한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등 보수작업이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진다면, 보수작업 신고·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이 보수작업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방법으로 간소화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 : '14. 7월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14. 8월 •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14. 9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작업 신고·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업체 부담 완화 및 물류 신속화에 기여

소관부처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042-481-7637)
관련법령	관세법,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창고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 시설요건, 내부통제시스템, 물동량 증가요건, 장비요건 등에 대해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의 특허심사 필요 • 내륙지에 보세창고를 특허받고자 하는 경우 물동량에 변동이 없어 이를 요건으로 적용하는 경우 신규특허에 어려움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세창고 난립 우려가 적은 내륙지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특허심사시 물동량 요건을 제외하도록 보세창고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창고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개정안 검토 : '14. 5월 • 전국세관 특허담당자 의견수렴 및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실시 : '14. 6. 11 • 보세창고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및 시행 : '14. 7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률적인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업체의 신규 진출(보세창고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소관부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관련법령	관세청 지침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 계약상이 환급 요건(관세법 §10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③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 ④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고, 환급신청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상 규정이 달라 수출시 처리절차나 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세관별로 상이한 절차나 서류를 요구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관별 위약수출 관련 업무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통일된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달 •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기간 등을 이유로 서류처리를 지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수출 서류심사와 관련하여 통일된 업무처리기준 마련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세관 수출담당부서 업무처리 현황 파악 : '14. 7월 • 위약수출 업무처리 관련 통일된 운영방안 마련 및 간담회 실시 : '14. 8~9월 • 위약수출 업무처리 관련 지침 시달 : '14. 10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관별 위약수출 업무처리 관련 처리현황을 파악한 후 통일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위약수출업무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

소관부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464)
관련법령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구매입찰시 과도한 실적요구로 중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제안서 요구 시 과도한 서류 및 증빙자료 요구로 비용 발생 및 오랜기간 소요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구매 입찰시 과도한 실적 제한을 완화하고 입찰참가 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인정기간을 평균 3년 → 5년 확대 * 실적제한 규모를 1배 이내 → 추정가격에 따라 고시금액 2.3억원 미만(미적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1/2), 고시금액 10억원 이상(1/3) 규모로 완화 또한,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안외형의 표준화 및 온라인 제출을 실시하고, 제안요청과 연계된 제안·평가 체계를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개념도 ></p>
------	---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업무처리기준 마련 : '14. 6월 e-발주지원시스템 구축('14년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R/ISP 사업 : '14. 3~9월, 시스템 구축 : '14. 7~12월, 개통 : '15. 1월
------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 실적제한입찰 완화로 창업초기 기업 및 영세기업의 입찰참가 및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적정한 실적제한으로 입찰경쟁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제한 완화로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 대하여 실적없는 업체의 30%가 입찰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불명확한 제안요청, 과도한 요구사항 감소 등으로 종전 보다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수 있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소관부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4056-7266)
관련법령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는 시중 상용품을 공공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서, 계약요청 상용품에 대한 시중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격당 3건의 납품실적을 계약체결 시 요구 • 다만, 현재 2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은 납품실적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창업 후 제품 개발 등을 거쳐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여 대상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에 미흡한 실정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 활성화 및 공공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인정범위를 현행 “사업개시일 2년 이내”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 정착기간을 고려하여 인정범위가 확대되면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초기기업 인정범위 개선방안 마련 : '14. 7월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개정 : '14. 10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납품기회 확대 및 안정적 수주 기회 마련으로 인해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강화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소관부처</p>	<p>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294)</p>
<p>관련법령</p>	<p>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국유림은 산림청장에게, 그 외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 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규정 • 이미 채석단지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채석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00분의 10으로 한정하고 있어 석재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 안에서 채석신고한 자가 규모 있는 채석과 원활한 건설 원자재 공급 등 채석단지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석단지 변경신고 면적범위를 완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현행></p> <p>(채석단지)</p>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정후></p> <p>(채석단지)</p> </div> </div>
<p>이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복구제도 개선방안 마련 : '14. 6월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입법예고 : '14. 9월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15. 1월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석 사업자의 채석단지 활용 편의 제고